■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8. 4.>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멸실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 일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감리자 (※ 해당하는 경우 작성)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지붕재(슬레이트 등) [] 천장단열재(석면포)	[] 바닥재(아스타일 등)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기타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철거함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해체공사 결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멸실여부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제12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4항제8호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297㎜[백상지(80g/㎡)]